


손해사정 수수료 Table

2014.12.01

1.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수수료

[단위:원]

손해사정금액	수수료	비 고
1백만원 이하	기본료 250,000원 (지방300,000원)	※ 손해사정액이란? 1. 직접손해액 기준 (간접손해 제외) 2. 과실상계전 금액
5백만원 이하		
5백만원 ~ 1천만원 이하		
1천만원 ~ 2천만원 이하		
2천만원 ~ 3천만원 이하		
3천만원 ~ 5천만원 이하	사전협의	
5천만원 ~ 1억원 이하		
1억원 초과		

- 주) 1. 위장사고 면책으로 결정된 건은 금액 및 난이도 감안 별도 협의
2. 산출된 보수가 차하위 구분에 의한 기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기준액 적용

2. 지방권은 교통비 및 통행료 별도 (교통비 : 1km:200원)

3. 출발지는 손사사무소 기준

4. 대중교통 및 출장지 2차 교통비 : 실비

5. 일비 : 3만원
숙박비 : 4만원